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참고사항
제1조(목적) 본 학칙은 극동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설립정신에 따라 심오한 학문연구와 학술이론의 응용 방법을 연구·교수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와 미래사회를 열어갈 진리탐구를 교육목적으로 하며, 본교에 설치한 대학원의 조직과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극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함) 학칙 제1절 교육조직에 규정되어 있는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0.00.>	▸ 상위 규정과 직렬 정리
제2조(대학원의 종류 및 교육목표) ① 본교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이하 “법”이라 함),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함)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② 본교에 설치된 대학원의 종류 및 교육목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 <개정 2010.09.02., 2011.08.19., 2018.10.08.>	제2조(대학원의 종류 및 교육목표) 우리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의 종류 및 교육목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 <개정 2010.09.02., 2011.08.19., 2018.10.08., 2020.00.00.>	
구 분	종 류	교 육 목 표
일 반 대학원	대학원	심오한 학술의 이론과 정치한 응용방법을 탐구하며, 전문적 지도자의 자질과 인격을 함양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특 수 대학원	교육대학원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공영에 봉사하는 전인적 교사와 교육전문가를 양성한다.
	글로벌대학원	21C 국가 및 지역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고 현장중심의 교육방식을 채택하여 분야별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한다.
	보건과학대학원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취지하에 특성화된 보건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교수 및 연구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분야에 이바지 하기 위한 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산업기술보안대학원	신기술 융합환경에서 산업의 핵심기술 및 자산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산업기술보호 전문도구와 방법론을 학습 및 연구함으로써 미래 융합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 전문가를 양성한다.
구 분	종 류	교 육 목 표
일 반 대학원	대학원	심오한 학술의 이론과 정치한 응용방법을 탐구하며, 전문적 지도자의 자질과 인격을 함양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특 수 대학원	교육대학원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공영에 봉사하는 전인적 교사와 교육전문가를 양성한다.
	글로벌대학원	21C 국가 및 지역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고 현장중심의 교육방식을 채택하여 분야별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한다.
	보건과학대학원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취지하에 특성화된 보건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교수 및 연구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분야에 이바지 하기 위한 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산업기술보안대학원	신기술 융합환경에서 산업의 핵심기술 및 자산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산업기술보호 전문도구와 방법론을 학습 및 연구함으로써 미래 융합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 전문가를 양성한다.
		▸ 용어 순화 ▸ 중복 문구 조정 ▸ 법령 단순 수록 개선

현 행	개 정 (안)	참고사항
<p>제3조(과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교의 대학원에는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의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함)으로 구분하고, 대학원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통합과정 2. 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통합과정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p>③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함)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함)을 둘 수 있다.</p> <p>④ 각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p> <p>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과 양 기관의 협약에 따른다.</p>	<p>제3조(학위과정) ① 우리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0.00.0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 2.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p>② ①항에 의하여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두는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함)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함)을 둘 수 있다.<개정 2020.00.00.></p> <p>③ 각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0.00.00.></p> <p>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세칙<극동규정 제99호> 및 관련 법령과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0.00.00.></p> <p>⑤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0.0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순화 ▫ 중복 문구 조정 ▫ 법령 단순 수록 개선
<p>제4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 할 수 있다.</p>		
<p>제6조(학과 및 정원)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각 과정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각 학과에 전공분야를 둘 수 있으며 전공분야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 편입학, 재입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학·군제휴협약에 의한 군위탁생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지원자 	<p>제4조(학과 및 정원)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각 과정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0.00.00> ② 제1항의 각 학과에 전공분야를 둘 수 있으며 전공분야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 편입학, 재입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학·군제휴협약에 의한 군위탁생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지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변경 ▫ 용어 순화
<p>제2장 입학</p>	<p>제2장 학사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구성 변경
<p><신설></p>	<p>제1절 학사운영 일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구성 변경

현 행	개 정 (안)	참고사항																									
<p><신설></p>	<p>제5조(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1학기, 2학기로 나눈다.<신설 2020.00.00.> ② 제1항의 학기 외에 방학 중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 학기를 둘 수 있다.<신설 2020.00.00.></p>	<p>▸ 조 내용 신설 ▸ 학사 독립 운영 기반 마련</p>																									
<p>제19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 재학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하고,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월(5학기), 재학연한은 7년(14학기)으로 하며, 통합과정의 경우 수업연한은 4년 6월(9학기), 재학연한은 8년(16학기)로 한다. 단, 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월(5학기), 재학연한은 4년 6월(9학기)로 한다. <개정 2013.05.21., 2017.04.25., 2018.10.08.></p> <p>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학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10.08.> ④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p>	<p>제6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우리 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다음의 표와 같다.<개정 2013.05.21., 2017.04.25., 2018.10.08. 2020.00.00.></p> <table border="1" data-bbox="1003 456 1908 724"> <thead> <tr> <th>구분</th> <th>종류</th> <th>학위과정</th> <th>수업연한</th> <th>재학연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일 반 대학원</td> <td rowspan="3">대학원</td> <td>석사</td> <td>2년(4학기)</td> <td>4년(8학기)</td> </tr> <tr> <td>박사</td> <td>2년 6월(5학기)</td> <td>7년(14학기)</td> </tr> <tr> <td>통합</td> <td>4년 6월(9학기)</td> <td>8년(16학기)</td> </tr> <tr> <td rowspan="2">특 수 대학원</td> <td>교육대학원</td> <td>석사</td> <td>2년 6월(5학기)</td> <td>4년 6월(9학기)</td> </tr> <tr> <td>교육대학원 외</td> <td>석사</td> <td>2년(4학기)</td> <td>4년(8학기)</td> </tr> </tbody> </table> <p>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학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20.00.00.> ④ 삭제<2020.00.00.></p>	구분	종류	학위과정	수업연한	재학연한	일 반 대학원	대학원	석사	2년(4학기)	4년(8학기)	박사	2년 6월(5학기)	7년(14학기)	통합	4년 6월(9학기)	8년(16학기)	특 수 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	2년 6월(5학기)	4년 6월(9학기)	교육대학원 외	석사	2년(4학기)	4년(8학기)	<p>▸ 조 변경 ▸ 용어 순화 ▸ 도식화를 통한 가독성 향상</p>
구분	종류	학위과정	수업연한	재학연한																							
일 반 대학원	대학원	석사	2년(4학기)	4년(8학기)																							
		박사	2년 6월(5학기)	7년(14학기)																							
		통합	4년 6월(9학기)	8년(16학기)																							
특 수 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	2년 6월(5학기)	4년 6월(9학기)																							
	교육대학원 외	석사	2년(4학기)	4년(8학기)																							
<p><신설></p>	<p>제7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0.00.00.> ②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신설 2020.00.00.> ③ 제1항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여 집중이수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0.00.00.></p>	<p>▸ 학사 독립 운영 기반 마련</p>																									
<p><신설></p>	<p>제8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0.00.00.> 1.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 겨울방학 ②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형실습이나 과제물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20.00.00.> ③ 총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20.00.00.></p>	<p>▸ 학사 독립 운영 기반 마련</p>																									

현 행	개 정 (안)	참고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5조(원격 교육과정) 통신망, 인터넷, 위성 방송망 등을 이용한 원격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제9조(수업방법)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수 있으며 원격강의, 팀티칭 수업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20.00.00.> ②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이 원칙이나, 야간에 수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생 모두의 동의를 얻어 주간에 수업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강의는 원격강의, 팀티칭 수업, 특강 등으로, 실습은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00.00.> ③ 통신망, 인터넷, 위성 방송망 등을 이용한 원격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 학사 독립 운영 기반 마련</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입학과 등록</p>	<p>▸ 규정구성 변경</p>
<p>제7조(입학시기) 본 대학원 학생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시기는 매 학기 초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01.30.></p>	<p>제10조(입학시기) 우리 대학원 학생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시기는 매 학기 <u>시작일로부터</u>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9.01.30., 2020.00.00></p>	<p>▸ 용어 순화</p>
<p>제8조(입학자격) ①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p> <p>1.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p> <p>가. 국내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취득 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p> <p>나. 외국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p> <p>2. 박사학위과정</p> <p>가. 국내·외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받았거나 취득 예정자</p> <p>나.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p> <p>②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지원 할 수 있는 자는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며, 재교육과정은 현직 교원이 아닌 학사학위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다. 단, 자격취득 과정은 해당기관 관계법령에 준한다. <개정 2015.05.15.></p> <p>③ 본 대학교 전임교원은 본 일반대학원 입학에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할 수 있으나 그 재학 기간은 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5.05.15., 2016.02.24.></p>	<p>제11조(입학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리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20.00.00.></p> <p>1.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00.00.></p> <p>2.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00.00.></p> <p>②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지원 할 수 있는 자는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며, 재교육과정은 현직 교원이 아닌 학사학위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다. 단, 자격취득 과정은 해당기관 관계법령에 준한다. <개정 2015.05.15.></p> <p>③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의 대학원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5.15., 2016.02.24., 2020.00.00.></p> <p>1. 일반대학원: 원칙적으로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할 수 있으나 그 재학 기간은 휴직하여야 한다.</p> <p>2. 특수대학원: 임용전공분야와 다른 전공의 특수대학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p> <p>④ 학·군제휴협약에 의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추천하는 군위탁생은 특수대학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 단, 군위탁지정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00.00.></p>	<p>▸ 용어 순화</p> <p>▸ 중복 문구 조정</p> <p>▸ 시행세칙으로의 불필요한 배치 개선(④항)</p>

현 행	개 정 (안)	참고사항
<p>제9조(지원절차)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u>소정의</u>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0조(지원전공) ①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자 중 타 전공자는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u>소정의</u> 보충과목(교과)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3.05.21., 2018.10.08.> ② 삭제 <2010.03.01.></p>	<p>제12조(지원절차 및 전공) ①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u>정해진</u>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00.00.> ②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자 중 타 전공자는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u>정해진</u> 보충과목(교과)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3.05.21., 2018.10.08., 개정 2020.00.00.> ③ <u>지원자의 구비서류는 모집요강으로 정한다.</u></p>	<p>조 변경 용어 순화</p>
<p>제11조(학생의 선발) 대학원 각 과정의 신입생은 <u>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u>에 의하여 선발한다.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p>	<p>제13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u>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u>하고 <u>서술전형 및 구술면접전형, 필답시험전형 중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한다.</u> 다만, 예체능계열 학과에 한하여 실기 및 기능시험을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고 시험의 방법 및 합격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20.00.00.> 1.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은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연구계획, 학부성적, 대학원과정 이수를 위한 전공수행 능력, 인성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2. 필답시험전형은 논문, 전공과목, 외국어 중에서 행하는데, <u>종별선택과 합격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u> ② <u>전공 관련분야에 전문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입학전형 시 우대할 수 있다.<신설 2020.00.00.></u> ③ <u>입학전형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모집요강으로 정한다.<신설 2020.00.00.></u></p>	<p>조 변경 세칙과 중복 개선</p>
<p>제12조(재입학) ①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3호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동일과정에 재입학한 자는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다만, 학칙19조에 규정된 재학연한이 만료된 영구수료자가 재입학 신청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1회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5.05.15.></p> <p>제13조(편입학) 타 대학원을 졸업하였거나 1학기 이상 이수한 자가 편입학을 지원할 경우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을 뺀 범위내의 여석이 있을 때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14조(편입학 및 재입학) ①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인한 재적생이 학과 또는 전공을 옮기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00.00.> ② <u>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u> ③ <u>영구수료자는 1회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잔여재학기간은 2년(4학기) 이내로 한다.<신설 2015.05.15., 개정 2020.00.00.></u> ④ <u>편입학 및 재입학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00.00.></u></p>	<p>용어 순화 중복 문구 조정 법령 단순 수록 개선</p>

현행	개정(안)	참고사항																									
<p>제14조(외국인학생)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학전형에 합격할 경우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원에서 별도로 지정한 학과는 외국인을 위한 학위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입학이 허락된 학생은 한국어사용 능력에 구애되지 않는다.</p>	<p>제15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각 대학원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의 입학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신설 2020.00.00.> ② 외국인으로서 우리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학전형에 합격할 경우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에서 별도로 지정한 학과는 외국인을 위한 학위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입학이 허락된 학생은 한국어사용 능력에 구애되지 않는다.<개정 2020.00.00.> ③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14조 및 제18조 제2항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정해진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한다.<신설 2020.00.00.></p>	<p>▶ 용어 순화 ▶ 중복 문구 조정 ▶ 시행세칙으로의 불필요한 배치 개선(①③항)</p>																									
<p>제15조(등록)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은 매 학기초 소정의 기일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p>	<p>제16조(입학금 및 등록) ① 신입학, 편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입학자는 신입학금의 1/2인 재입학금을 납부해야 한다.<신설 2020.00.00.> ②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하며, 각 대학원의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여 아래의 등록생 권한을 획득하여야 한다.<개정 2020.00.00.> 1. 정규등록: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지도 받을 수 있다. 2. 연구등록: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 논문 연구지도 받을 수 있으며, 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학점을 이수할 경우 ④항의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각 대학원의 과정별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 학기는 아래와 같다. <신설 2020.00.00.></p>	<p>▶ 조 변경 ▶ 용어 순화 ▶ 고등교육법 제11조 2020.06.04. 시행 대비(②항) ▶ 시행세칙으로의 불필요한 배치 개선(④,⑤항)</p>																									
<p><시행세칙> 제11조의2(수업연한경과후의 등록)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수업연한 경과 후 미취득 학점에 대한 수강신청을 할 경우 1학점에서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1,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05.21.> 제11조의3(학칙 제19조에 규정된 재학연한이 만료된 영구수료자 등록) 재입학금(입학금의 50%)과 매학기 정하는 기간 내에 소정의 납입금(등록금의 10%)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5.15.></p>	<table border="1" data-bbox="864 938 1774 1225"> <thead> <tr> <th>구분</th> <th>종류</th> <th>학위과정</th> <th>정규등록 (수업연한)</th> <th>연구등록 (재학연한-수업연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일반 대학원</td> <td rowspan="3">대학원</td> <td>석사</td> <td>2년(4학기)</td> <td>4학기(8학기-4학기)</td> </tr> <tr> <td>박사</td> <td>2년 6월(5학기)</td> <td>9학기(14학기-5학기)</td> </tr> <tr> <td>통합</td> <td>4년 6월(9학기)</td> <td>7학기(16학기-9학기)</td> </tr> <tr> <td rowspan="2">특수 대학원</td> <td>교육대학원</td> <td>석사</td> <td>2년 6월(5학기)</td> <td>4학기(9학기-5학기)</td> </tr> <tr> <td>교육대학원 외</td> <td>석사</td> <td>2년(4학기)</td> <td>4학기(8학기-4학기)</td> </tr> </tbody> </table> <p>④ 수업연한 경과 후 미취득 학점에 대한 수강신청을 할 경우 1학점에서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1,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0.00.00.> ⑤ 제14조 ③에 따라 재학연학이 만료된 영구수료자의 재입학시 등록은 재입학금(입학금의 50%)과 매학기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학기 등록금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0.00.00.> ⑥ 등록금을 납부하고 규정에 따른 기일 내에 휴학한 경우에는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신설 2020.00.00.></p>	구분	종류	학위과정	정규등록 (수업연한)	연구등록 (재학연한-수업연한)	일반 대학원	대학원	석사	2년(4학기)	4학기(8학기-4학기)	박사	2년 6월(5학기)	9학기(14학기-5학기)	통합	4년 6월(9학기)	7학기(16학기-9학기)	특수 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	2년 6월(5학기)	4학기(9학기-5학기)	교육대학원 외	석사	2년(4학기)	4학기(8학기-4학기)	
구분	종류	학위과정	정규등록 (수업연한)	연구등록 (재학연한-수업연한)																							
일반 대학원	대학원	석사	2년(4학기)	4학기(8학기-4학기)																							
		박사	2년 6월(5학기)	9학기(14학기-5학기)																							
		통합	4년 6월(9학기)	7학기(16학기-9학기)																							
특수 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	2년 6월(5학기)	4학기(9학기-5학기)																							
	교육대학원 외	석사	2년(4학기)	4학기(8학기-4학기)																							

현 행	개 정 (안)	참고사항
<p><시행세칙> 제11조(등록금 및 입학금 반환사유) 각 과정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한 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 편입학, 재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에 입학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2조(입학금 반환기준) ① 입학 학기 개시일 전에 앞 조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 전액을 반환한다. ② 입학개시일 이후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등록금 반환기준) 등록금 반환 기준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4조(반환절차) ① 반환사유가 발생한 자는 입학포기원 또는 자퇴원을 제출하고 교학과에 등록금 반환신청 을 하여야 한다. ② 교학과는 입학포기 원 또는 자퇴원서 사본 및 등록금 납부영수증(학생보관용)을 첨부하여 사무처를 경유, 총장의 결재 이후 지출한다.</p>	<p>제17조(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을 반환한다.<신설 2020.0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세칙에서 학칙으로 위치 변경 ▸ 중복 삭제 ▸ 상위법 명칭 정정
<p><신설></p>	<p>제3절 학적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구성 변경
<p>제16조(휴학 및 복학) ① 휴학은 입대·가사·질병(의병), 임신, 출산, 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10.08.> ② 제16조 1항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일수 1/4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10.08.> ③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기간과 질병으로 인한 의병휴학, 장기해외지사근무(가족포함), 장기해외출장(가족포함), 임신, 출산, 육아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10.08.> ④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수업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휴학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지체없이 복학하여야 한다. ⑥ 휴학자의 복학은 정하여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10.08., 2019.01.30.></p>	<p>제18조(휴학 및 복학) ① 휴학은 입대·가사·질병(의병), 임신, 출산, 육아(8세 이하의 자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10.08., 2020.00.00> ② 제16조 1항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 수업일수 1/4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10.08., 2020.00.00> ③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기간과 질병으로 인한 의병휴학, 장기해외지사근무(가족포함), 장기해외출장(가족포함), 임신, 출산, 육아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10.08., 2020.00.00> ④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수업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휴학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지체 없이 복학하여야 한다.<개정 2020.00.00> ⑥ 휴학자의 복학은 정하여진 기일 내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10.08., 2019.01.30., 2020.0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변경 ▸ 용어 순화

현행	개정(안)	참고사항
<p>제17조(자퇴) 자진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0.08.></p>	<p>제19조(자퇴) 자진 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0.08., 2020.0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변경 ▸ 용어 순화
<p>제1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함을 원칙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기간이 경과하여도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대학원위원회에서 징계로 제적된 자. 	<p>제20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00.0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기간이 경과하여도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대학원위원회에서 징계로 제적된 자. 4. 재학연한 내에 수료 또는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변경 ▸ 용어 순화 ▸ 미졸업자 처우
<p>제25조(전공의 변경) ① 전과 및 전공변경은 입학 후 1개 학기가 경과한 후에 승인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새로운 학과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6.02.24.></p> <p>② 전과 및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02.24., 2018.10.08.></p> <p><시행세칙></p> <p>제33조(전공변경) ① 전과 및 전공변경은 입학 후 1개 학기가 경과한 후에 승인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새로운 학과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6.02.24.></p> <p>② 전과 및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서류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2.24.></p>	<p>제21조(전공변경) ① 전과 및 전공변경은 입학 후 1개 학기가 경과한 후에 승인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새로운 학과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p> <p>② 전과 및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서류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변경 ▸ 용어 정리 ▸ 시행세칙과 중복
<p><신설></p>	<p>제4절 교육과정, 교과목 및 학점취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구성 변경
<p>제20조(교육과정) ① 각 교과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p> <p>②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p> <p><시행세칙></p> <p>제19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p>	<p>제22조(교육과정) ①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00.00.></p> <p>② 교과목은 각 학위과정별 교육과정에 따른다.<신설 2020.00.00.></p> <p>③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개정 2020.00.00.></p> <p>④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0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변경 ▸ 중복 삭제 ▸ 현행 미실하는 학과교수회의 내용 정리

현행	개정(안)	참고사항																																																																																			
<p>제21조(이수학점 및 수수료) ①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24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 연구과정은 12학점 이상으로 하고 특수대학원은 논문작성제는 24학점 이상, 졸업시험제는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글로벌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과정 중 졸업시험제의 최저이수학점은 27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05.21., 2018.10.08.></p> <p>② 각 대학원은 매 학기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최소 이수학점은 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전학기의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는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3.05.21.></p> <p>③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수료 및 졸업의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제 19조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을 이수하고 제 21조 1항의 이수학점과 각 대학원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p> <p>④ “수수료”라 함은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며,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p> <p>⑤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졸업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p> <p><시행세칙> 제21조(이수학점) ①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주당 1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p> <p>② 각 대학원 과정별 이수해야 할 학점은 아래와 같으며 논문연구는 총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3.05.21., 2017.04.25., 2018.10.08., 2019.01.30.></p> <p>■ 일반대학원: 생략(개정안과 동일) ■ 특수대학원 및 연구과정: 생략(개정안과 동일)</p> <p>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별 이수학점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3.05.21., 2018.10.08.> - 아래표: 생략(개정안과 동일)</p> <p>④ 대학원에서 논문작성 제에 해당하는 석사과정은 2학기차부터 학기당 1학점씩 3학점의 연구학점을 취득하고, 박사과정 및 교육대학원은 3학기차부터 학기당 1학점씩 3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단, 해외연수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차에 3학점으로 연구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3.05.21., 2017.04.25., 2018.10.08., 2019.09.04.></p>	<p>제23조(이수학점 및 수수료) ① 각 대학원의 과정별 수수료학점은 아래 각 호와 같으며 논문연구는 총 수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13.05.21., 2018.10.08., 2020.00.00></p> <p>1. 일반대학원</p> <table border="1" data-bbox="1003 343 1899 507"> <thead> <tr> <th>영역별 학위과정</th> <th>전공</th> <th>연구(필수)</th> <th>수수료학점 계</th> </tr> </thead> <tbody> <tr> <td>석사</td> <td>24</td> <td>3</td> <td>24학점 이상</td> </tr> <tr> <td>박사</td> <td>36</td> <td>3</td> <td>36학점 이상</td> </tr> <tr> <td>통합</td> <td>60</td> <td>3</td> <td>60학점 이상</td> </tr> </tbody> </table> <p>2. 특수대학원 및 연구과정</p> <table border="1" data-bbox="1003 566 1899 1008"> <thead> <tr> <th>대학원별</th> <th>영역별</th> <th>교직</th> <th>전공</th> <th>연구</th> <th>수수료학점 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교육대학원</td> <td>논문작성제</td> <td>(4)</td> <td>24</td> <td>3(필수)</td> <td>24학점 이상</td> </tr> <tr> <td>졸업시험제</td> <td>(4)</td> <td>30</td> <td>-</td> <td>30학점 이상</td> </tr> <tr> <td rowspan="4">글로벌대학원</td> <td>논문작성제</td> <td>-</td> <td>24</td> <td>3(필수)</td> <td>24학점 이상</td> </tr> <tr> <td>졸업시험제</td> <td>-</td> <td>30</td> <td>-</td> <td>30학점 이상</td> </tr> <tr> <td rowspan="2">사회복지학과</td> <td>논문작성제</td> <td>(6)</td> <td>24</td> <td>3(필수)</td> <td>24학점 이상</td> </tr> <tr> <td>졸업시험제</td> <td>(6)</td> <td>27</td> <td>-</td> <td>27학점 이상</td> </tr> <tr> <td rowspan="2">보건과학대학원</td> <td>논문작성제</td> <td>-</td> <td>24</td> <td>3(필수)</td> <td>24학점 이상</td> </tr> <tr> <td>졸업시험제</td> <td>-</td> <td>30</td> <td>-</td> <td>30학점 이상</td> </tr> <tr> <td rowspan="2">산업기술보안대학원</td> <td>논문작성제</td> <td>-</td> <td>24</td> <td>3(필수)</td> <td>24학점 이상</td> </tr> <tr> <td>졸업시험제</td> <td>-</td> <td>30</td> <td>-</td> <td>30학점 이상</td> </tr> <tr> <td colspan="2">연구과정</td> <td>-</td> <td>12</td> <td>-</td> <td>12학점 이상</td> </tr> </tbody> </table> <p>② 논문작성제에 해당하는 석사과정은 2학기 차부터 학기당 1학점씩 3학점의 연구학점을 취득하고, 박사과정 및 교육대학원은 3학기 차부터 학기당 1학점씩 3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단, 해외연수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차에 3학점으로 연구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3.05.21., 2020.00.00></p> <p>③ 각 대학원은 매 학기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최소 이수학점은 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전학기의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는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20.00.00></p> <p>④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수료 및 졸업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p> <p>1. 수수료: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정해진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2. 졸업: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p> <p>⑤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졸업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증서(서식6)를 수여할 수 있다.</p>	영역별 학위과정	전공	연구(필수)	수수료학점 계	석사	24	3	24학점 이상	박사	36	3	36학점 이상	통합	60	3	60학점 이상	대학원별	영역별	교직	전공	연구	수수료학점 계	교육대학원	논문작성제	(4)	24	3(필수)	24학점 이상	졸업시험제	(4)	30	-	30학점 이상	글로벌대학원	논문작성제	-	24	3(필수)	24학점 이상	졸업시험제	-	30	-	30학점 이상	사회복지학과	논문작성제	(6)	24	3(필수)	24학점 이상	졸업시험제	(6)	27	-	27학점 이상	보건과학대학원	논문작성제	-	24	3(필수)	24학점 이상	졸업시험제	-	30	-	30학점 이상	산업기술보안대학원	논문작성제	-	24	3(필수)	24학점 이상	졸업시험제	-	30	-	30학점 이상	연구과정		-	12	-	12학점 이상	<p>조 변경 시행세칙과 냉용 정리</p> <p>중복</p>
영역별 학위과정	전공	연구(필수)	수수료학점 계																																																																																		
석사	24	3	24학점 이상																																																																																		
박사	36	3	36학점 이상																																																																																		
통합	60	3	60학점 이상																																																																																		
대학원별	영역별	교직	전공	연구	수수료학점 계																																																																																
교육대학원	논문작성제	(4)	24	3(필수)	24학점 이상																																																																																
	졸업시험제	(4)	30	-	30학점 이상																																																																																
글로벌대학원	논문작성제	-	24	3(필수)	24학점 이상																																																																																
	졸업시험제	-	30	-	30학점 이상																																																																																
	사회복지학과	논문작성제	(6)	24	3(필수)	24학점 이상																																																																															
		졸업시험제	(6)	27	-	27학점 이상																																																																															
보건과학대학원	논문작성제	-	24	3(필수)	24학점 이상																																																																																
	졸업시험제	-	30	-	30학점 이상																																																																																
산업기술보안대학원	논문작성제	-	24	3(필수)	24학점 이상																																																																																
	졸업시험제	-	30	-	30학점 이상																																																																																
연구과정		-	12	-	12학점 이상																																																																																

현 행	개 정 (안)	참고사항																																																												
<p>제22조(보충과목) 대학원에 입학한 자 중 보충과목(교과) 이수가 필요한 자는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5.21., 2018.10.08.></p> <p><시행세칙> 제22조(보충과목) ① 삭제 <2013.05.21.> ② 삭제 <2013.05.21.> ③ 교육대학원의 교직과목은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9.01., 2019.01.30.> ④ 주임교수는 부전공 이수대상자에 대하여 소속 교수와 협의하여 이수하여야 할 과목을 지정하고 대학원장에게 첫 학기 개시 1주일 이내에 “보충과목 부과 내역서” 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삭제 <2013.05.21.> ⑥보충과목 이수학점은 총 9학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졸업이수학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0.08.></p>	<p>제24조(보충과목) ① 대학원에 입학한 자 중 보충과목(교과) 이수가 필요한 자는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21., 2018.10.08., 2020.00.00> ② 교육대학원의 교직과목은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20.00.00> ③ 주임교수는 부전공 이수대상자에 대하여 소속 교수와 협의하여 이수하여야 할 과목을 지정하고 대학원장에게 첫 학기 개시 1주일 이내에 “보충과목 부과 내역서” 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0.00.00> ④ 보충과목 이수학점은 총 9학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수료학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00.00.></p>	<p>조 변경 시행세칙과 중복 비용 정리</p>																																																												
<p><신설></p>	<p>제5절 시험, 성적, 학점인정</p>	<p>규정구성 변경</p>																																																												
<p>제23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말 그 학기에 수업한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서는 이를 특수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25조(시험)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과목에 따라 이를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00.00.></p>	<p>조 변경 유권해석의 유연성 확보</p>																																																												
<p>제24조(성적) ① 학업성적의 등급의 평점 및 점수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96 994 981 1201"> <thead> <tr> <th>등급</th> <th>점수</th> <th>평점</th> <th>등급</th> <th>점수</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A⁺</td> <td>100 ~ 95</td> <td>4.5</td> <td>C⁺</td> <td>79 ~ 75</td> <td>2.5</td> </tr> <tr> <td>A</td> <td>94 ~ 90</td> <td>4.0</td> <td>C</td> <td>74 ~ 70</td> <td>2.0</td> </tr> <tr> <td>B⁺</td> <td>89 ~ 85</td> <td>3.5</td> <td>F</td> <td>69이하</td> <td>0</td> </tr> <tr> <td>B</td> <td>84 ~ 80</td> <td>3.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② 취득학점의 인정은 각 과목당 성적등급 C(평점2.0)이상으로 하고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의 인정은 총성적 평점평균 B(평점3.0)이상으로 한다. ③ 매 학기 출석일수가 4분의 3 미만일 때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학점은 자동 F처리된다. <개정 2013.05.21.></p>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	100 ~ 95	4.5	C ⁺	79 ~ 75	2.5	A	94 ~ 90	4.0	C	74 ~ 70	2.0	B ⁺	89 ~ 85	3.5	F	69이하	0	B	84 ~ 80	3.0				<p>제26조(성적) ① 학업성적의 등급의 평점 및 점수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1014 994 1899 1201"> <thead> <tr> <th>등급</th> <th>점수</th> <th>평점</th> <th>등급</th> <th>점수</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A⁺</td> <td>100 ~ 95</td> <td>4.5</td> <td>C⁺</td> <td>79 ~ 75</td> <td>2.5</td> </tr> <tr> <td>A</td> <td>94 ~ 90</td> <td>4.0</td> <td>C</td> <td>74 ~ 70</td> <td>2.0</td> </tr> <tr> <td>B⁺</td> <td>89 ~ 85</td> <td>3.5</td> <td>F</td> <td>69이하</td> <td>0</td> </tr> <tr> <td>B</td> <td>84 ~ 80</td> <td>3.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② 취득학점의 인정은 각 과목당 성적등급 C(평점2.0)이상으로 하고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의 인정은 총성적 평점평균 B(평점3.0)이상으로 한다. ③ 매 학기 출석일수가 4분의 3 미만일 때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학점은 자동 F처리된다. <개정 2013.05.21.> ④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잘못이 아닌 담당교수의 착오로 성적이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 정정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00.00.></p>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	100 ~ 95	4.5	C ⁺	79 ~ 75	2.5	A	94 ~ 90	4.0	C	74 ~ 70	2.0	B ⁺	89 ~ 85	3.5	F	69이하	0	B	84 ~ 80	3.0				<p>조 변경 성적정정 시행세칙으로부터 이전</p>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	100 ~ 95	4.5	C ⁺	79 ~ 75	2.5																																																									
A	94 ~ 90	4.0	C	74 ~ 70	2.0																																																									
B ⁺	89 ~ 85	3.5	F	69이하	0																																																									
B	84 ~ 80	3.0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	100 ~ 95	4.5	C ⁺	79 ~ 75	2.5																																																									
A	94 ~ 90	4.0	C	74 ~ 70	2.0																																																									
B ⁺	89 ~ 85	3.5	F	69이하	0																																																									
B	84 ~ 80	3.0																																																												

현행	개정(안)	참고사항
<p>제26조(학점인정 및 학점교류) ① 타 대학원으로부터 편입한 자는 대학원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5.21.></p> <p>② <u>대학원과 학점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타 대학원(국내·외 대학원 및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1/2까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본 대학원에 개설된 학과와 동일한 학과에 한하여 인정한다.</u></p> <p>③ 해외연수는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및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50시간 당 1학점으로 인정하며 150시간 이상 이수 시에는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외의 대학 및 기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9.09.04.></p> <p><시행세칙></p> <p>제34조의2 (타 학과, 타 대학원 수강 및 학점 인정) ① 대학원은 타 학과(타 전공 포함) 및 타 대학원간의 공동강의를 통하여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p> <p>② <u>교내대학원 타 학과(타 전공포함) 및 국내외 타 대학원(군 관련 대학원을 포함) 과목의</u> 수강을 원하는 재학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7.04.25.></p> <p>③ 별도의 협약에 의한 경우는 <u>당해</u> 협약내용에 따른다. <신설 2010.11.12.></p>	<p>제27조(학점인정 및 학점교류) ① 타 대학원으로부터 편입한 자는 대학원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5.21.></p> <p>② <u>대학원은 타 학과(타 전공 포함) 및 타 대학원간의 공동강의를 통하여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00.00.></u></p> <p>③ <u>대학원과 학점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타 대학원(국내·외 대학원 및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1/2까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본 대학원에 개설된 학과와 동일한 학과에 한하여 인정한다.<개정 2020.00.00.></u></p> <p>④ <u>교내대학원 타 학과(타 전공포함) 교과목의 수강을 원하는 재학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7.04.25., 2020.00.00.>></u></p> <p>⑤ 해외연수는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및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50시간 당 1학점으로 인정하며 150시간 이상 이수 시에는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외의 대학 및 기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00.00.></p> <p>⑥ 별도의 협약에 의한 경우는 <u>해당</u> 협약내용에 따른다. <신설 2010.11.12., 개정 2020.00.00.></p>	<p>조 변경 시행세칙 내동과 통합하여 학칙으로 이전</p>
<p>제27조(자격시험) ① <u>본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1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u></p> <p>1. 외국어시험 : 매년 4월, 10월에 실시한다.</p> <p>2. 종합시험 : 매년 4월, 10월에 실시한다.</p> <p>②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은 모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대학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그 실시 여부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③ 각 대학원의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④ 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해당 학과에서 시행하는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p>	<p>제27조(자격시험) ① <u>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0.00.></u></p> <p>1. 외국어시험 : 매년 4월, 10월에 실시한다.</p> <p>2. 종합시험 : 매년 4월, 10월에 실시한다.</p> <p>②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은 모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대학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그 실시 여부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③ 각 대학원의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④ 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해당 학과에서 시행하는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p>	<p>조 변경 ①, ②항간 상충 내용 정리</p>

현 행	개 정 (안)	참고사항
<p>제28조의2(졸업시험) 특수대학원은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p> <p>① 졸업시험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시작 후 15일 이내에 졸업선택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필요한 경우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2학기 종료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졸업선택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졸업선택변경은 학위논문에서 졸업시험으로의 변경만 가능하다. <본조신설 2013.05.21.></p>	<p>제29조(졸업시험) 특수대학원은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00.00></p> <p>① 졸업시험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시작 후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필요한 경우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제에서 졸업시험제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3.05.21., 개정 2020.0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변경 ▫ 용어 순화
<p>제28조(학위논문) 학위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는 학위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04.></p> <p>① 원생은 학위수여일 1개월 이전에 학위청구 논문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대학원은 논문 제출자로부터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논문심사위원이 실시하며,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석사학위과정 3명, 박사학위과정 5명으로 한다.</p>	<p>제30조(학위논문) 학위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는 학위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04.></p> <p>① 대학원생은 학위수여일 1개월 이전에 학위청구 논문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0.00></p> <p>② 대학원은 논문 제출자로부터 정해진 논문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00.00></p> <p>③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논문심사위원이 실시하며,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석사학위과정 3명, 박사학위과정 5명으로 한다.</p> <p>④ 이 조의 실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0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변경 ▫ 용어 순화 ▫ 현행 업무 처리에 부합하도록 수정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절 공개강좌, 연구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구성 변경
<p>제35조(연구과정) ① 대학원에는 심오한 학문 또는 기술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해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정의 수료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p> <p>② 입학자격은 제 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p> <p>③ 수업연한은 1년(2학기)으로 하되,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연구생에게는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p> <p>⑤ 연구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p>	<p>제31조(연구과정) ① 대학원에는 심오한 학문 또는 기술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해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정의 수료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p> <p>② 입학자격은 제1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하며 정해진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00.00></p> <p>③ 수업연한은 1년(2학기)으로 하되,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연구생에게는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서식7)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0.00.00></p> <p>⑤ 연구생의 학사에 관한 사항은 석사과정에 준한다.<개정 2020.00.00></p> <p>⑥ 연구생이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을 때는, 이미 수강한 과목 중 8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 학점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재학기간이 단축되지는 아니한다.<개정 2020.0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변경 ▫ 시행세칙과 중복내용 조정 후 관련 시행세칙 조항 삭제
<p>제36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p> <p>② 공개강좌명, 교과과목, 수강인원 및 개설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대학원장이 발표한다.</p>	<p>제32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p> <p>② 공개강좌개설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p> <p>③ 공개강좌의 수강생은 정해진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변경 ▫ 시행세칙과 중복내용 조정 후 관련 시행세칙 조항 삭제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등록·휴학·복학·자퇴·제적</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학위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구성 변경

현행	개정(안)	참고사항
<p>제29조(학위수여) ①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학위 수여요건은 본 대학원의 학칙 제21조에 의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단,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생은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각 대학원별로 실시하는 졸업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2.></p> <p>② 통합과정 퇴학자 또는 중도 포기자로서 석사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p> <p>③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p> <p>④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수학위(dual degree)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02.24.></p> <p>⑤ 대학원의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2.24.></p>	<p>제33조(학위수여) ① 학위 수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라야 한다.<개정 2020.00.0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등록을 필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이 B(3.0) 이상인 자 3.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단,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 글로벌대학원, 보건과학대학원, 산업기술보안대학원) 석사과정은 논문지도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위청구논문으로 가름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2020.00.00> <p>② 통합과정 퇴학자 또는 중도 포기자로서 석사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p> <p>③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서식1, 4)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서식2, 3)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p> <p>④ 우리 대학원과 국내·외 타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양교 각각의 명의로 복수학위(dual degree)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 수여를 위한 교류대학 수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02.24., 2020.00.00.></p> <p>⑤ 복수학위학위과정 학생은 우리 대학원과 교류대학의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류대학과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6.02.24., 2020.00.00.></p>	<p>▸ 조 변경</p> <p>▸ 정보공시 간소화로 인해 학칙 및 시행세칙 외 학사 규정 조정</p> <p>▸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시행세칙 폐지</p>
<p><신설></p> <p><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시행세칙></p> <p>제3조(학위종별) ①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p> <p>②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p> <p><개정 2010.09.02., 2011.08.19., 2012.08.30., 2014.09.30., 2015.11.10., 2016.05.20., 2017.11.13., 2018.10.08., 2019.09.04.> (다음 생략)</p>	<p>제34조(학위종별)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박사학위의 종별은 <별표2>과 같다.<신설 2020.00.00.></p>	
<p>제30조(명예박사학위수여)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p>	<p>제35조(명예박사학위수여)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서식5)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00.00.></p>	<p>▸ 조 변경</p>
<p>제31조(학위수여의 취소) ①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5.15.></p> <p>②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05.15.></p>	<p>제36조(학위수여의 취소) ①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5.15.></p> <p>②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05.15.></p>	<p>▸ 조 변경</p>

현 행	개 정 (안)	참고사항
제4장 수학연한·교육과정·이수학점·수료	제4장 학생	▸ 규정구성 변경
제32조(학칙준수) 원생은 본 학칙과 본 대학교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학원장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37조(학칙준수) 대학원생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학원장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개정 2020.00.00.>	▸ 조 변경 ▸ 용어 순화
제33조(징계) 원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38조(포상 및 징계) ① 총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0.00.00.> ② 학칙을 위반하거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20.00.00.>	▸ 조 변경 ▸ 포상근거 마련
제34조(장학금)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00.00.>	▸ 규정구성 변경
제5장 성적 및 학점인정	제5장 조직 및 대학원위원회	▸ 규정구성 변경
제37조(조직) ① 각 대학원에는 원장과 필요한 교원과 직원을 두며, 직제는 본 대학교 직제 규정에 따른다. ② 각 대학원에는 학과 및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주임교수는 전공분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학생의 전공과제의 지도 및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제40조(조직) ① 직제는 우리 대학교 직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00.00.> ② 각 대학원에는 학과 및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주임교수는 전공분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학생의 전공과제의 지도 및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각 대학원에 학생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20.00.00.>	▸ 조 변경 ▸ 용어 순화
제38조(대학원위원회) ①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의 위원(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0.0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8. 생략	제41조(대학원위원회) 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개정 2020.00.00.> ② 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의 위원(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0.0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8. 생략	▸ 조 변경 ▸ 용어 순화
제39조(의결) ①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0.00.00.> ⑤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00.00.>	

현 행	개 정 (안)	참고사항
제6~9장	<u><삭제></u>	
<신설>	<u>부칙</u>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참고사항		
[별표 1] 대학원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개정 2010.09.02., 2011.08.19., 2012.08.30., 2014.09.30., 2015.11.10., 2016.05.20., 2017.11.13., 2018.10.08., 2019.09.04.>						[별표 1] 대학원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개정 2010.09.02., 2011.08.19., 2012.08.30., 2014.09.30., 2015.11.10., 2016.05.20., 2017.11.13., 2018.10.08., 2019.09.04., 2020.00.00.>								
구분	대학원별	과정별	계열별	학과(전공)	입학정원	구분	대학원별	과정별	계열별	학과(전공)	입학정원			
일반 대학원	대학원	박사 과정	인문사회	경영학과	20명	일반 대학원	대학원	박사 과정	인문사회	경영학과	20명			
			인문사회	항공운항서비스학과						항공운항서비스학과				
			인문사회	외식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인문사회	상담심리치료학과						상담심리치료학과				
			인문사회	항공안전관리학과						폐지		폐지		
			자연	보건과학과					자연	보건과학과				
			공학	정보통신학과					공학	정보통신학과				
	석사 과정	인문사회	경영학과	10명	인문사회		경영학과	10명						
		공학	정보통신학과				정보통신학과							
			에너지IT공학과				에너지IT공학과							
			스마트모바일학과				스마트모바일학과							
		예체능	디자인학과				10명		예체능	디자인학과				
			공연영상학과							공연영상학과				
			교육행정전공							교육행정전공				
상담교육전공	상담교육전공													
교육 대학원	석사 과정	인문사회	컴퓨터교육전공	35명	교육 대학원	석사 과정	인문사회	컴퓨터교육전공	35명					
			평생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						
			경영학과					37명		특수 대학원	글로벌 대학원	석사 과정	인문사회	경영학과
			건물자산관리학과											건물자산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항공서비스경영학과	항공서비스경영학과													
호텔관광학과	호텔관광학과													
상담심리치료학과	상담심리치료학과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아동영어교육학과	아동영어교육학과													
군사학과	군사학과													
자연과학	항공운항관리학과	자연과학	항공운항관리학과											
보건과학 대학원	석사 과정	자연과학	보건과학과	15명	보건과학 대학원	석사 과정	자연과학	보건과학과	15명					
			산업기술 보안대학원					석사			공학	기술보안학과	10명	
				빅데이터분석학과		산업기술 보안대학원	석사 과정		공학			기술보안학과		
													빅데이터분석학과	
총 계					127명	총 계					127명			

[별표 2] 석·박사학위의 종별<신설 2020.00.00.>

구분	대학원별	학위 구분	학위 과정	학과	전공	학위종별
일반 대학원	대학원	학술 학위	박사 과정	경영학과	-	경영학박사
				항공운항서비스학과	-	항공운항서비스학박사
				외식경영학과	-	외식경영학박사
				상담심리치료학과	심리재활	상담심리치료학박사
				보건과학과	-	이학박사
				정보통신학과	-	공학박사
			석사 과정	경영학과	-	경영학석사
				정보통신학과	-	공학석사
				에너지IT공학과	-	공학석사
				스마트모바일학과	-	공학석사
				디자인학과	-	미술학석사
	공연영상학과	-	공연영상학석사			
	교육 대학원	전문 학위	석사 과정	교육학과	교육행정	교육학석사(교육행정)
					상담교육	교육학석사(상담교육)
					컴퓨터교육	교육학석사(컴퓨터교육)
					평생교육	교육학석사(평생교육)
특수 대학원	글로벌 대학원	전문 학위	석사 과정	경영학과	경영학	경영학석사(경영학)
				건물자산관리학과	건물자산관리학	건물자산관리학석사(건물자산관리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학)
				항공서비스경영학과	항공서비스경영학	항공서비스경영학석사(항공서비스경영학)
				호텔관광학과	호텔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석사(호텔관광경영)
				상담심리치료학과	가족치료 및 통합예술치료	상담학석사(가족치료 및 통합예술치료)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	경찰행정학석사(경찰행정학)
				아동영어교육학과	아동영어교육학	아동영어교육학석사(아동영어교육학)
				군사학과	군 리더십	군사학석사(군 리더십)
				항공운항관리학과	항공운항관리학	항공운항관리학석사(항공운항관리학)
	보건과학 대학원	전문 학위	석사 과정	보건과학과	보건학	보건학석사(보건학)
					방사선학	보건학석사(방사선학)
					작업치료학	보건학석사(작업치료학)
					비전사이언스학	보건학석사(비전사이언스학)
	산업기술 보안대학원	전문 학위	석사 과정	기술보안학과	침해사고대응	공학석사(침해사고대응)
				빅데이터분석학과	빅데이터보안	공학석사(빅데이터보안)

[서식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석 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월 ○○일생

논문제목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과 석사학위과정(○○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제출한 논문이 대학원 위원회의 심사에 통과되어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극동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극동대학교 총장 (학위명) ○ ○ ○ (인)

학위번호 : 극동대 _____

※전공이 없는 학과의 경우 학과명만 기입

[서식2] 논문제출자(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석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월 ○○일생

논문제목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제출한 논문이 대학원위원회 심사에 통과되어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극동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극동대학교 총장 (학위명) ○ ○ ○ (인)

학위번호 : 극동대 _____

[서식3] 비논문자(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석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극동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극동대학교 총장 (학위명) ○ ○ ○ (인)

학위번호 : 극동대 _____

[서식4]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박 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월 ○○일생

논문제목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과 박사학위과정(○○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제출한 논문이 대학원 위원회의 심사에 통과되어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극동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극동대학교 총장 (학위명) ○ ○ ○ (인)

학위번호 : 극동대 _____

※전공이 없는 학과의 경우 학과명만 기입

[서식5] 명예박사

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공적을 기리고자 명예 ○○학
박사학위 수여를 인정함 .

○○○○년 ○○월 ○○일

극동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명예○○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

○○○○년 ○○월 ○○일

극동대학교 총장 (학위명) ○ ○ ○ (인)

학위번호 : 극동대 _____

제 호

수 료 증 서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위과정 ○○○학과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극동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극동대학교 총장 (학위명) ○ ○ ○ (인)

제 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과(○○전공)연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연구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극 동 대 학 교 대 학 원 장 (인)